

『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상표사용권이 취소된 경우의 재사용 신청 제한기간을 단축하여 상표 사용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상표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다시 신청 불가능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(안 제16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"붙임"
 -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7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□ 본 『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
-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 함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표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,
- 재사용 신청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상표 사용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